

2006. 8. 31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센터

기업윤리 브리프스 *Business Ethics Briefs*

< 차례 >

01 UN Global Compact 반부패 원칙

반부패 보고서 발간

26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한진

교보생명

34 국내 윤리경영 동향

☞ 이 자료는 국가청렴위원회 디지털기업윤리센터(<http://ethics.kica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I.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

- * 2006년 4월 UN Global Compact가 발간한 「기업의 반부패원칙(10th Principle) 실천 사례(*Business against corruption : Case stories and examples*)」 책자중 일부 내용을 번역, 정리한 것임

【반부패 보고서 발간】

- ☐ UN 글로벌 컴팩트 참가자들은 컴팩트의 10번째 원칙(반부패 : 기업은 금품 강요 및 뇌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의 이행 상황을 매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야 함
 - o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부패 방침을 이행하고 있고 개선조치를 마련하여 제대로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것임
- ☐ 부패방지 보고서 발간 및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위협에 대한 예방책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 구축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고서 발간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동기)

- ☐ 기업 및 기타 조직들은 규제당국에서부터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들로부터 비재무적 문제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은 보고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 ☐ 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요구는 그들의 관심이 환경이나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등과 같은 큰 이슈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및 안전성과 같은 특정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기업이 취하는 행동방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발생

☐ 보고서 이용자는 다음과 같음

- 보고서 작성 기업
- 동종 사업부문 및 경쟁 업체
- 준법감시인
- 규제 및 입법 당국
- 투자자 및 펀드메니저
- 공급망, 고객
- 여신공급업자(금융기관)
- 다국적 개발은행, 국제개발기구, 수출신용기구 등
- 언론 및 종업원
-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증가)

☐ 최근 몇 년 동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및 남아프리카 등에서 이루어졌음

☐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경영 현안들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지는 않음

- UN 환경프로그램의 2005년 보고서는 소장 분석가들이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등과 같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편, 불충분한 정보, 교육 또는 수단 때문에 그러한 사안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업무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

☐ 질적 정보에 대한 욕구는 쉽게 충족되어지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스캔들에 의해 신뢰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및 보고서 발표에 따라 압도되기도 함

☐ 기업들은 매우 많은 양의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토론 기피 또는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보고서에서 주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들이 생략되거나 간과될 수 있음

☐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를 원하고 있음

- 정보가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가?
- 신뢰할 수 있는가?
- 이해할 수 있는가?
- 확신을 갖고 실행될 수 있는가?
- 이해관계자들이 그 정보에 반응할 수 있는가?

(보고주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부패문제)

☐ 많은 주요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근거에 깔려있는 부패문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주요 의제로 부각되어지지 않고 있음

- 2005년 KPMG 서베이는 다수의 보고서(61%)가 기업지배구조 섹션을 포함하고 있음에 반해, 5개의 보고서중 오직 1개 보고서만이 뇌물 또는 부패에 대한 방침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방침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 그러나 언론기사 및 기업보고서에서의 부패문제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반부패 이슈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주요 아젠다임을 알려주는 것임

- UN 반부패협약 및 UN 글로벌 컴팩트 10번째 원칙의 도입 등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보고서의 표준화 지향)

☐ 2005년 UN 서베이는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시 환경, 사회 및 기업지배구조 영향 등과 관련된 문제들의 중요성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더욱 나은 질의 비교가능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결론

☐ 학계, 비정부기구 또는 씽크 탱크 등이 독립된 목소리로 발표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같은 보고 체제, 서베이, 분석 및 지표 등을 통해 해결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중임

- 보고서 작성 기구들은 보고서에 대한 인증 또는 보증을 통하여 스스로 더 높은 신뢰도를 추구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TI)와 같은 비정부기구들은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기회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대한 분석 및 견해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책임은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임
- 비정부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는 정보들에 대한 지침을 기업들에게 제시하고 포괄적인 보고서 지표들을 개발해야 하는 책임을 질 수 있음
 - GRI는 이러한 작업 수행에 있어 리더라 할 수 있으나 부패지표의 완전한 개발에 대한 임무는 국제투명성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맡겨져 있음

(보고서가 필요한가?)

- 조직들은 보고서 작성에 소요된 노력이 전반적인 목표 또는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 정부, 연구기관 및 비정부기구들로부터의 기업 및 기구들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기관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요청을 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어 있음
 - 또한 정보 요청기관들은 그들의 요청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확보된 정보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함
- UN 글로벌 컴팩트의 목표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10가지 원칙을 진전시키고 진전 상황을 인정하거나 더 많은 진전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진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

- 방침 및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 진전 상황 및 결과가 측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례회의(annual Communication of Progress)가 이용되고 있음
- GRI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고서 발간 기관과 그 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이 보고서 발간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있음
- FTSE4Good지수*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세계 인권 등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을 확인가능하게 해줌
- *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지(FT)와 런던증권거래소(LSE)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FTSE International이 개발한 지수
- FTSE4Good지수는 기업 방침, 경영시스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모범 기준 체제상의 기준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영국의 경영자 기구인 기업협회(Business in the Community : BitC)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업들과의 작업을 통해 공공선을 창출하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 BitC가 발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는 책임경영 관행에 대한 영국내 선도적 벤치마크인데, FTSE 100 및 FTSE 250으로부터 매년 약 150여개 기업, DowJones 지속가능경영지수 부문에 포함된 선도기업, 경영자 협회에 소속된 대형 기업 등이 참가 요청을 받고 있음

(기업들의 보고서 발간 목적)

- 자율강령의 준수(Compliance with a voluntary code)
 - 기업 조직들은 UN 글로벌 컴팩트와 같은 자율강령을 준수하기로 서약

☐ 협회 회원 가입조건(Membership association requirement)

- 자율강령 준수의 변형 형태로서 사회단체보다는 기업부문에서 서약형태로 이루어짐
- 국제검사기관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의 경우 각 회원사의 준법프로그램내에 행동강령 준수 관련 주요 요소를 포함시키도록 한 한편, 청렴성, 이해상충, 비밀엄수, 뇌물방지, 공정경쟁 등과 관련한 행동강령 및 기업윤리를 포괄하는 협회의 준법강령 준수상황을 매년 보고토록 의무화

☐ 규제준수(Compliance with regulation)

- 비재무보고서의 의무적인 발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정부, 증권거래소 및 기타 규제당국이 정한 법령 및 규제 등에 의한 것임

☐ 경영의 질 공개(Demonstrating quality of management)

- 펀드매니저는 반부패 실적 보고서를 경영의 질을 평가하는 요소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위험관리의 질 평가(Assessing quality of risk management)

- 펀드매니저 및 투자자들은 정부 또는 증권거래소 규정의 요구에 따라 보고될 수 있는 사업의 핵심위험에 대한 정보가 필요

☐ 평판 및 신뢰도 구축(Building reputation and credibility)

☐ 사전 자격요건(Pre-qualification requirement) 충족

- 반부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들의 공급업자들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
- 특히 다국적개발은행이나 수출신용기구 등은 대출실행에 앞서 반부패 관행과 관련된 사전 자격요건 충족 요건을 높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속적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 보고

- o 일부 기업조직의 경우 시장 및 당해 사업 분야의 특성에 기인하여 뇌물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고서 발간을 통해 반부패 절차나 성과를 감시하고 개선

☐ 경쟁기업 또는 사업부문 에 대한 영향(Peer or sector action)

- o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선도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반부패 실적 및 보고서 발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여타 기업들에게 압력을 줄 수 있음

☐ 이해관계자의 기대 및 요구 충족(Meeting stakeholder expectations and needs)

(반부패를 위한 강령 및 체제)

☐ 반부패와 관련된 국제 강령은 지금까지는 뇌물과 자금세탁에 초점이 맞춰져 왔음

- o 그것들은 준법강령이 아니며 단지 UN글로벌 컴팩트가 진전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함

☐ 부패에 대항하기 위해 발의된 Global Sullivan Principles(GSP) 및 유사 원칙들은 동 원칙에 참가할 것을 서명한 기업들로 하여금 사례를 제출하도록 권장

☐ UN 글로벌 컴팩트와 더불어 반부패에 초점을 맞춘 국제 강령원칙들은 다음과 같음

가.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원칙(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 o 2002.12월 국제투명성기구(TI)와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SAI)* 주도로 제안된 원칙으로 기업, NGO, 노동조합, 학계 출신의 복수 이해당사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발되고 지원됨

* 1997년 이해당사자회의를 통해서 작업환경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SA8000 및 SA8000의 감사인을 인정하는 프로세스를 개발

-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원칙(BPCB)은 OECD의 『국제상거래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1997)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동 협약 및 법이 외국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반해 동 원칙은 사인간의 뇌물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위한 Global Sullivan Principles

- o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미국기업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고용정책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작된 것으로서 동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 197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자들에게도 미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Sullivan Principles를 제정·시행한 이후 비즈니스의 국제적 표준이 됨
- 동 원칙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동 원칙에 대한 서명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초기에는 12개의 미국 기업들이 참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참가기업수가 늘어나 현재는 187개에 이름
- o 서명자들로 하여금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등 공정한 경쟁을 촉진토록 요구

다. 부당뇌물강요 및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국제상공회의소 규정(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Rules of Conduct to Combat Extortion and Bribery)

- o 동 규정은 1996년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의해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2005.10월에는 급행료 지급거절 조항을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위규행위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보고할 수 있는 비밀 채널을 구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더욱 엄격한 규정이 발표됨

라. 뇌물방지를 위한 The 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PACI) Principles

-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2004년 발표됨
- 서약에 참가한 기업들은 PACI 원칙에 근거하여 반뇌물 및 반부패 실행을 약속하거나 벤치마크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해 PACI 원칙을 사용하여야 함

마. 울프스버그 원칙(Wolfsberg Principles)

- Wolfsberg 그룹은 고객 바로 알기, 돈세탁방지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금융지원 방지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산업 표준 및 관련 제품 개발을 목표로 형성된 12개 글로벌 은행의 연합회임
- 동 그룹의 프라이빗 बैं킹(private banking)에 대한 돈세탁방지 원칙이 2000년 10월에 발행된 이후 2002년 5월에 개정
- 또한 2002년 1월에는 對 테러리즘 금융서비스에 대한 원칙을 발표한 데 이어 2002년 11월에는 코레스 बैं킹(correspondent banking)에 대한 돈세탁 방지 원칙을 발표
- 2003년 9월 돈세탁 감시, 심사 및 수색 등에 대한 가장 최근 원칙이 발표되었음

(보고 체계 및 기관)

□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은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 수단임

- 다양한 보고 기관 및 조직을 통하여 기업의 청렴성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가 수집 및 보고되고 있으나 이 중 부패방지는 일부만 취급되고 있음
- 이러한 정보수집 및 보고 기관에는 AccountAbility Rating과 Governance Metrics International 등을 들 수 있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타 주체로는 지속가능경영 상담자,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매니저, 연구기관 및 전문기업 등이 있음

- 기업의 반부패 실행 보고를 위한 전 세계적인 지표는 아직 없는 상태임
 - 1995년 이래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의 부패인식을 연차 서베이 방식으로 조사하여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뇌물공여 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에 대한 인식도로 산출되는 뇌물공여지수(BPI)도 발표
- 개선된 방법론에 의한 새로운 뇌물공여지수의 발표가 계획되어졌는데, 민간부문과의 작업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는 반부패 절차 및 실적에 대한 보고의 투명성과 질에 주력
 - 이 작업의 핵심은 기업조직의 반부패 방침 및 실행내용을 보고함에 있어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을 개발하고 권장하는 것임
- 국제투명성기구는 보고 수단 및 지표를 개발하고 사용되어지는 지표들의 개념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문해 줌
 - 아울러 국제투명성기구는 보고서 발간시 어떠한 지표들이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문
- 국제투명성기구(TI)의 민간부문 보고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가. 기업 부패 조절지수(Corporate Control of Corruption Index)
 - 국제투명성기구는 반부패 방침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회사 규정 등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기존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부문 및 기업의 순위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중
 - 나. 기업 뇌물방지 스코어 모델(Corporate Anti-Bribery Scoring Model)
 - 국제 투명성기구의 뇌물방지 스코어 모델은 기업들에게 뇌물방지에 대한 자체평가 및 내부 벤치마킹을 위한 스코어 모델을 제공할 것임
 - 국제투명성기구는 2005년도 반부패 보고의 투명성을 주제로 한 영국 공인회계사협회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수상자를 결정할 때 동 모델을 사용한 바 있음

(국제적인 보고 기관)

- 국제적으로 보고서 발간을 선도하는 다수의 기관들이 반부패 보고를 위한 지표를 개발해 오고 있음

가. UN 글로벌 컴팩트(UNGC)

- UN 글로벌 컴팩트는 참가기업들로 하여금 연간 반부패 실적 공시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원칙에 이행서약, 시스템, 행동조치 이행 등의 이름으로 제공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된 보고지침을 제공

나.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 동 지표는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원칙에 기반을 둔 반 부패보고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

다. FTSE4Good Index Series

- 뇌물방지를 위한 기준이 2006년에 추가되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는 동 기준 개발을 지원

라.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GRI는 보고 지침으로 새로운 안(G3)을 준비하고 있으며 협의용 시안은 2006년초에 발표되었음
- 국제투명성기구(TI)도 지표개발에 참가했는데 시안에는 반부패와 관련한 포괄적인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침 최종안은 2006년 가을에 발표될 예정

마. 기업의 사회적책임 경영 지수(Business in the Community Corporate Responsibility Index)

- 동 지수는 반부패의 일환인 청렴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4개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음

<참 고>

뇌물방지를 위한 FTSE4Good의 기준
(FTSE4Good Criteria for Countering Bribery)

- ☐ FTSE4Good Index Series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세계 인권 등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회적 책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을 나타내줌
 - o 뇌물방지는 FTSE4Good Index Series 도입시 확인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기준
- ☐ 뇌물방지를 위한 FTSE4Good 기준은 기업들이 도전하여 달성가능한 표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데 있음
 - o 동 기준의 목표는 영향력이 크면서도 뇌물 및 부패 관리에 있어 아직 모범규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뇌물 및 부패문제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질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것임
- ☐ 뇌물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은 잠재적으로 뇌물 및 부패관행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FTSE4Good 대상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을 적절히 관리가능하게 해줄 것임
- ☐ 뇌물방지를 위한 FTSE4Good 기준은 UN 및 OECD협약의 부속 내용으로 창안된 국제투명성기구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원칙을 시발점으로 삼고 있음
- ☐ FTSE4Good 기준 지표는 방침, 관리시스템, 보고 또는 공시 등의 체계가 포괄된 모범규준 안에 제시되어 있는데 기업의 위험 또는 영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은 그러한 문제를 더욱 많이 다루어야 함

가. 고위험(High risk)

- FTSE 기준의 체계상 가장 많이 요구되는 기준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기업에 적용되도록 요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뇌물방지 기준의 경우 처음에는 뇌물 및 부패에 대한 노출위험이 가장 높은 기업들에게만 적용
- 포괄적인 기준체계는 기업의 업무 특성이나 영업하고 있는 국가 등에 따라 높은 위험을 보유하게 되는 기업을 식별하고자 다양한 수단을 사용

나. 방침(Policy)

- FTSE는 반부패 방침이 의향서(statement of intent)로서 완전한 실행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많은 현안들이 민감한 사안들이고 급행료와 같은 뇌물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합의된 정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제시한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원칙의 주요 권장 사항은 FTSE4Good의 반부패 방침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권장 내용이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과 실행 가능한 내용간의 균형을 맞추어줄 뿐만 아니라 당해 분야에서의 모범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다.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s)

- 효과적인 방침은 경영시스템을 통하여 실행될 수 있어야 함
- FTSE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원칙이 잠재적 뇌물 문제의 위험성을 반드시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

라. 보고(Reporting)

- 일반적으로 뇌물 및 부패방지를 위한 방침이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높은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좋은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불응(non-compliance) 및 사후 조치 등과 같은 성과지표들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아직 많지 않으며, 이는 이러한 성과지표들이 기업보고서에서 비교적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임
- 그러나 투명성은 뇌물방지 수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한 근간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핵심적인 요소임
- 뇌물방지를 위한 FTSE4Good 기준이 발표될 때, 일반적으로 FTSE4Good 지수 산정 대상 기업들에게 통보되어지고 FTSE의 기업 이행 프로그램은 적절한 이행기간 마련 차원에서 연장되는 절차를 거침

(기업의 반부패 보고서 발간)

- 기업의 반부패 보고서 발간은 환경 보고서에 비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이는 반부패 보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부패 보고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기도 함
 - 부패는 본질적으로 비밀스럽고, 감춰져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 범위 또한 뇌물수수, 이해 충돌, 자금 세탁을 망라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함
 -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도 부패는 복잡한 주제로 여겨지며, 인권 문제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님
-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부패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해야 할 주요한 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부패방지활동 보고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는 UN 글로벌 컴팩트 참가 기업임)

가. BP(British Petroleum)*

- BP는 2004년 지속가능보고서에서 윤리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해고된 종업원의 수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갱신하지 않았던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함

나. Co-operative Insurance Society(CIS)

- CIS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베이 실시 후에 2005년 윤리적 업무방침(Ethical Engagement Policy)을 도입하였는데 그 당시 이해관계자들은 CIS에게 기업들이 다루어야 할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윤리 아젠다를 설정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함
- 서베이에 응답한 고객들중 98퍼센트의 지지를 얻은 새로운 방침은 CIS의 인권, 무기 교역, 환경, 근로 기준, 동물 보호 등의 이슈 취급시 지침이 될 것임
- 또한 CIS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기업들에게 사기, 뇌물 및 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safeguards)를 갖추도록 요구할 것임

다. GE

- GE의 2005년 기업시민정신 보고서(Citizenship Report)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9페이지에 걸쳐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종업원과의 대화, GE 임원들의 책무, 검토 과정, 옴부즈만 제도, 청렴성 관련 보고 자료, 교육훈련 조치, 사고예방, 조사, 시정조치 관련 법적 절차 및 시스템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

라. Lafarge*

- Lafarge의 2004년 지속가능보고서는 급행료 지불과 같은 특정 부패 위험 영역을 포함하여 부패 위험과 예방대책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
- 그룹 차원(group-wide)의 실행 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며 동 계획에는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이를 보완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포함될 것임

마. Shell*

- o Shell의 2004년 보고서는 반부패 관련 주요 지표들을 열거하고 있음
- o 종업원에 대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직원의 82%(2002년도에는 78%)가 자신의 부서가 뇌물이나 Shell의 경영 원칙 위반을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o 또한 Shell은 부패 관련 조사 및 해고 건수에 대해서도 보고

바. Titan Cement *

- o Titan Cement의 2004년 사회책임보고서에는 뇌물방지방침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가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위험 분석과 이행상황의 모니터링을 위한 일관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의 초기 상황에 대한 기술이 포함됨

(반부패 보고서 발간을 위한 성과와 절차 지표)

☐ 반부패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가. 부패의 범위 또는 정의

- o TI는 부패를 '주어진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함
- o 부패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뇌물
 - 이해 충돌
 - 공모, 정실주의, 연고주의
 - 금품 강요
 - 사기, 횡령
 - 불법적인 정보 유출
 - 자금 세탁

나. 보고서 작성 범위(The boundaries for reporting)

- 기업들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급 체인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는가?
-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반부패 보고서는 대출 기업이 적정 부패방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추출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기업의 지급 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

다. 주요 지표들이 이용되어야 하는가?

라. 벤치마킹을 위해 반부패 관련 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 데이터의 성질이 계량적이거나 서술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양자간의 조합이어야 하는가?

마. 반부패 보고서 작성 지표들은 외부 규범, 제도, 강령 또는 보고 체계와 어느 정도까지 관련되어야 하는가?

바. 반부패 보고서 발간을 통해 얻게 될 기대 효과나 책임은 무엇인가?

사. 반부패 활동의 개선 계획과 목표는 승인되고 공표되어야 하는가?

(반부패 보고서 작성 지표)

- ☐ TI는 기업들이 반부패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 8가지를 고려할 것을 제안함

가. 방침

- 기업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반부패 방침을 제대로 갖추고, 이를 공표하고 있는가 ?

나. 부패 위험 평가

- 기업이 부패와 관련된 위험의 특성을 평가하였는가?

○ 위험평가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짐

- 먼저 기업은 다른 위험과 관련된 부패의 위험을 평가
- 그 결과 부패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하는 활동, 직무 및 업무수행과정 그리고 영업 관계 등의 측면을 인식하기 위한 위험 평가를 수행

다. 조직

- 부패방지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가?
-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사지배권, 리더십, 감사위원회의 역할 등을 포함함

라. 계획 수립 및 실행

- 기업은 반부패 방침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동 세부내용도 보고하고 있는가?

마. 성과

- 기업은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 기업이 사용하는 성과 지표는 무엇인가?
- 성과 지표로는 보고회(reporting communication) 개최, 교육 훈련, 법규 위반과 해고 및 종업원 서베이 실시 횟수, 내부신고전화(hotlines) 이용 또는 내부 고발 횟수 등이 있음

바. 모니터링과 개선

- 부패방지 시스템은 작동되고 있는가? 점검 절차는 무엇인가? 이사회는 부패방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가?

사. 대응성(Responsiveness)

- 이해관계자들은 컨설팅을 받고 있는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기업은 공개적이고 명백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그 보고는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아. 인증(verification)

- 기업의 반부패 보고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가?
기업은 독립적인 외부 인증자를 이용하는가? 인증자의 보고서는 어느 정도의 품질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반부패 보고서의 이슈)

가. 내부

- 기업의 보고서 작성 여부 결정은 UN 글로벌 컴팩트나 기업협회의 참가자에게 부여된 외부에 대한 의무 사항과 기업의 평판 제고, 위험 관리 또는 지속적 개선 등의 사업 효익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의 수행과 관련된 비용, 노동력 및 관심 등의 향배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
- 소규모의 기업들에게 자원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반부패 보고서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기업들에게 보고의 중요성을 납득시키고, 적절한 보고서 작성 체계를 제공하고, 몇 가지 주요 지표에 집중해야 함

나. 공통 기준

- 반부패 보고서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보고서상의 정보는 이해관계자들과 보고 기업 모두에게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분석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공통적인 기준 또는 지표들이 개발되어야만 가능함
- GRI 가이드라인
 - GRI 가이드라인은 선도적인 보고서 작성 체계로서, 2004년의 '비재무 보고상의 위험과 기회 모범사례'라는 서베이에서 상위 50개 기업 중 47개(94%) 기업의 보고서가 공개적으로 GRI 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12개(24%) 기업은 GRI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 하위 50개 기업 중에서는 7개 기업(14%)이 GRI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반면 45개 기업(90%)은 GRI 기준의 일부만 참조하고 있음

o 비정부조직(NGOs)

- 비정부조직들과 윤리투자연구소(Ethical Investment Research Service ; EIRIS) 등의 연구기관은 독립적인 연구와 자체 생산 자료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아동보호기금(the Save the Children Fund)의 경우 2005년에 석유가스산업의 수익 투명성을 측정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동 보고서에는 수익 투명성 측정용 보고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같은 해에 Global Witness는 추출산업용 국제 재무보고 기준을 요구하는 논문을 발표함

o 부패방지를 위해 TI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개발된 공통지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요 지수 개발자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음

o TI는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민간부문용 측정수단들을 포괄적인 지표에 맞추기 위한 조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임

다. 계량지표와 서술지표(numeric/narrative)

- o 정보 요청 조직들은 정보 수집시 계량지표와 서술지표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
- o 계량정보는 분석이 가능하며, 신뢰 구축과 이행 상황 파악에 중요한 비교가능성을 제공함
- o 그러나 계량지표만으로는 상이한 보고 기업들간 또는 특정 이슈간에 차이를 설명하거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음
- o 서술지표는 보고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활동의 깊이, 중요성 및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됨
- 이는 특히 반부패 보고에서 계량지표는 의견, 훈련 시간, 위반이나 해고와 같은 주제에만 한정하여 사용되기 때문임

- 부패방지는 특정 조직에 고유한 반부패 접근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술지표의 투입은 조직의 이행 약속을 설명하고 모범사례나 갈등상황의 예를 제공하는데 중요함

라. 보고의 완전성(Completeness in reporting)

- 보고의 완전성은 신뢰 구축에 중요한 요소임
- 만약 보고 기업조직이 보고 사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기업조직의 본질적인 이슈나 관심사항은 누락될 수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에 관한 2004년 ACCA 서베이는 많은 보고서들이 부문별 영향과 글로벌 이슈와 같은 큰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평가

마. 법적 책임(Legal liability)

- 일부 기업, 특히 미국 기업들의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으로 그들의 보고서 정보에 대한 능력을 제한받을 수 있음

바. 중소기업(SMEs)

- 중소기업들은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고유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으며 윤리와 준법감시 담당 간부와 같은 전문가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대기업과는 달리 반부패 이슈나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또한 중소기업들은 금품 강요에 직면했을 때 대기업만큼의 협상 능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원 또한 제한되어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뇌물과 부패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부패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더욱이 고객들도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반부패 방침과 절차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은 간단한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선물·향응 관련 방침을 수립할 수 있으며, 뇌물과 여타 형태의 부패에 대항하기 위해 동업자단체를 통하거나 다른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들도 그들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는가?)

- 기업들은 보고서 발간이 가치있으며, 생산된 정보가 기업의 평판을 제고하고, 내부 개선에 적용되고, 주요 지속가능경영 이슈들을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공헌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보고서의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함
- 이용자들에게 보고서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반부패 이슈를 다루거나 기업 또는 사업 분야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보고서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뢰성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원함
-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인증 또는 보고서에 대한 보증은 보고자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방식이며, 공식적인 인증을 받는 것이 신뢰도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
- 회계 전문가, 인증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A1000 보증표준(Assurance standard : AS)와 ISAEA 3000 등의 보고 표준은 선도적인 인증보고 기업들이 이용하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음
 - AA1000 AS는 2003년 3월 AccountAbility 社가 중요성, 완전성, 대응성의 원칙을 기초로 한 조직 전반의 공시 및 성과를 망라하는 인증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표함
 - 2005년 1월에는 국제회계사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 IFAC)의 국제회계감사와 증명기준위원회(the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 IAASB)가 인증 참여를 위한 체계와 기준인 ISAE3000을 공표하였는데, 현재 모든 전문 회계 네트워크들은 동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TI는 기업들에게 반부패 경영 원칙(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에 바탕을 둔 자기평가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평가모듈(Self-Evaluation Module : SEM)을 개발하고 있음
- 자기평가모듈은 대략 200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포커스 집단들(focus groups)에 의해 테스트되었고, 2006년 초까지는 현장 테스트를 마칠 예정임
- 자기평가모듈은 TI의 독립적인 외부인증도구(Independent External Verification Tool)의 핵심이 될 것이며, 독립적인 외부인증도구도 2006년 초까지 자기평가모듈과 함께 현장 테스트를 거칠 예정임
- KPMG의 2005 지속가능보고 국제 서베이에 따르면 GFT250(Global Fortune)의 기업 중에서 공식인증서를 갖춘 보고서의 비중이 30%(48개 보고서)로서 1999년의 19% 및 2002년의 29% 대비 소폭 증가
- UNEP와 Sustainability에 의한 2002년 상반기 리서치에 따르면 1994년에는 전세계적인 상위 50개 기업들 중 겨우 4%가 보고서 인증을 받았으나, 1997년 및 2000년에는 동 비중이 각각 28%, 50%로 증가한 데 이어 2002년에는 68%로 증가
- 인권과 부패방지 이슈들은 환경이나 보건 및 안전과 같은 이슈들에 비해 정보와 자료의 생산이 어려움
- KPMG의 2005년 지속가능보고 국제 서베이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R) 보고서의 많은 내용이 보건 · 안전 및 환경 관련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에 관한 의견에 국한되어 있음
- 이는 보증이 확인된 이용자 그룹을 고려하여, 보증되어야 하는 것 보다는 기존 데이터 등록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보증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부패방지를 위한 도전 과제는 기업들의 보고서 작성과 성과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표준 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결 론)

- ☐ UN Global Compact에 대한 서명자들은 금품강요와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한 방지 활동을 하는 10번째의 반부패원칙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있음
 - 이는 부패불용방침을 수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서약을 지지하기 위한 방침과 절차도 이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기업들은 반부패원칙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부패는 본질적으로 숨겨져 있음
 - 따라서 보고서 작성은 적절한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과 동 시스템의 유효성 측정이 가능한 주요 지표들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 많은 기업들이 반부패 방침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적절히 이행하는 기업들은 극히 적음
 - 부패방지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의 평판을 제고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함
- ☐ 부패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위험 요소임
 -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은 특정 자원과 경영 환경에 따라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부패위험 평가는 자원과 관심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될 것임
- ☐ 부패방지 보고를 위한 기법들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음
 - 보고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고기업들간의 비교가 가능한 공통 기준이 필요함
 - 선도 기업들이 보고서 작성 사례와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GRI는 계량지표에 초점을 맞춰서 지표개발을 해 나가고 있음
 - 서술적(narrative) 보고방식은 보고 기업들이 활동의 깊이, 중요성, 구

체적 상황을 설명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됨

- o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주요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 SRI) 지표와 CSR initiatives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과 NGO에 의해서 공통된 성과지표들이 개발되고 있음

□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독립적인 인증과 보증이 핵심사항임

- o 인증을 위한 많은 글로벌 지속가능 보증 기준이 존재함
- o TI는 부패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인증 기법을 개발하고 있음
- o 현재는 부패방지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기업이 별로 없지만, 점차 변화될 것으로 기대
- o UN Global Compact 참가자들은 보고서 작성을 선도하고, 부패방지 이행 상황을 보여 주며,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고를 받음

II.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1. (주)한진의 윤리경영 사례*

* 2006. 8. 20일 한진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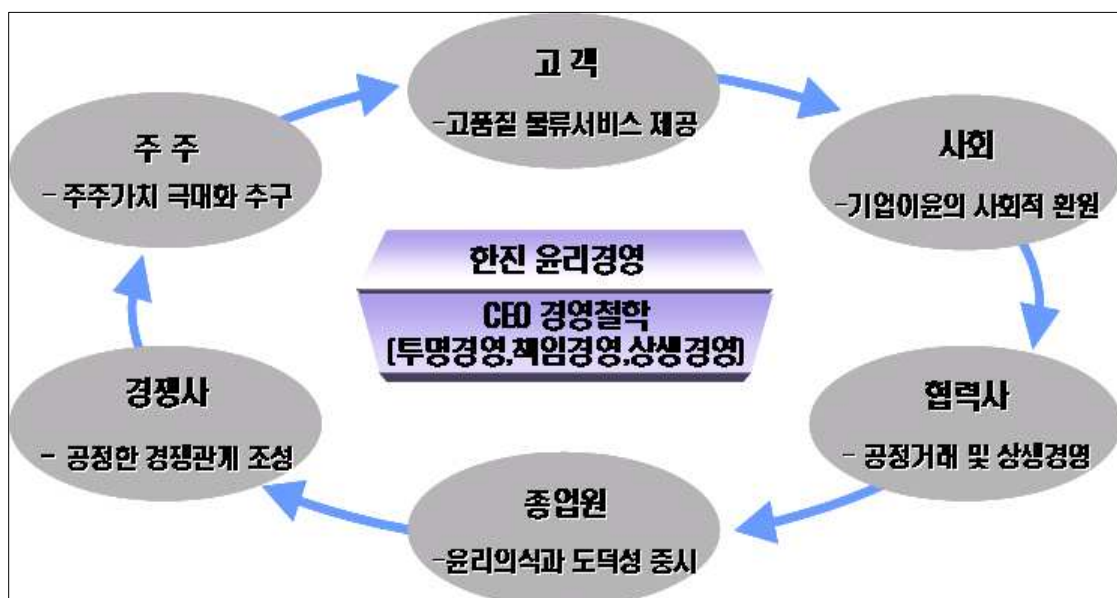
《윤리경영 가치체계》

가. 정 의

- CEO의 경영철학인 투명경영, 책임경영, 상생경영의 기반 위에 각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법적 책임준수는 물론 사회통념에 의해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경영활동 전반의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에 반영함

나. 기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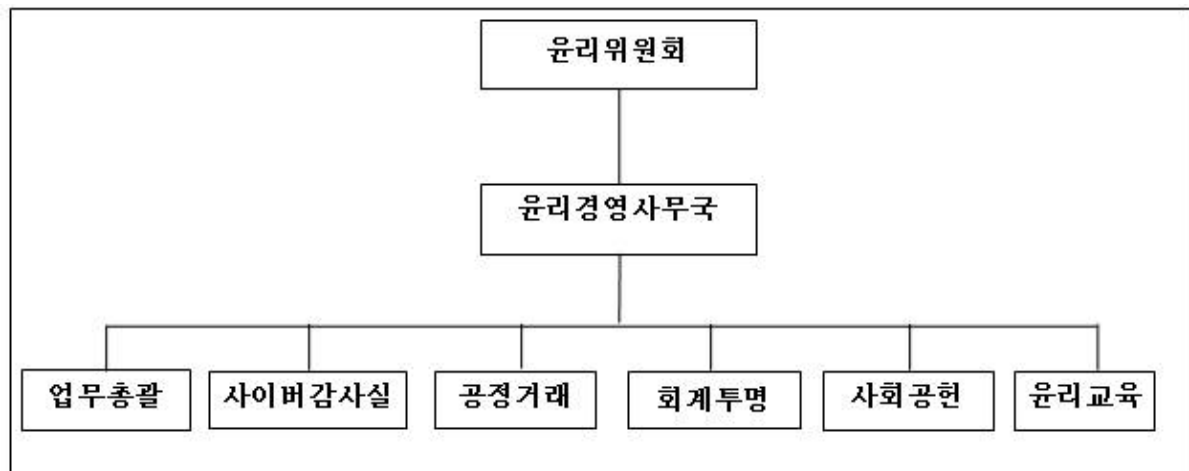
- 원칙과 정도를 바탕으로 한 투명경영
- 고객-사회-환경에 대한 책임경영
-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



《 윤리경영 추진 조직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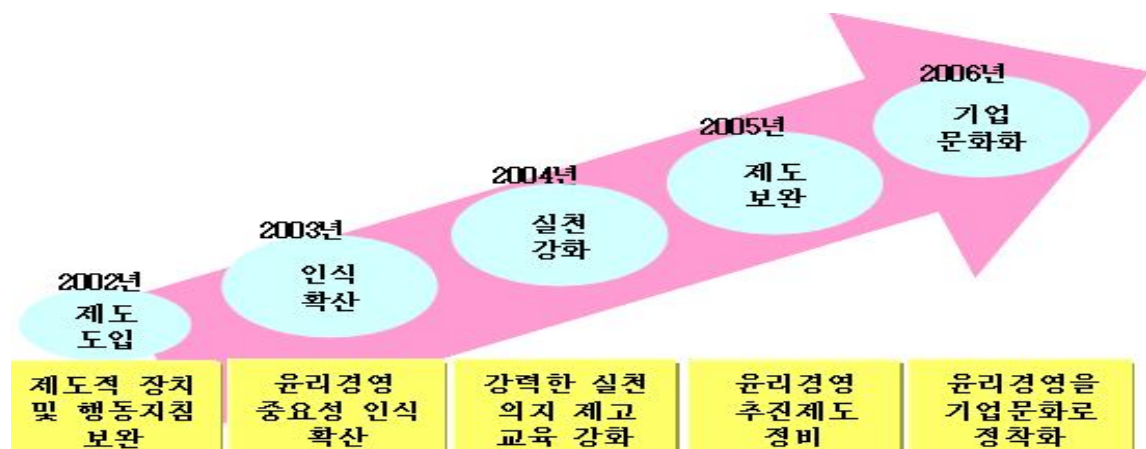
◎ 윤리위원회 및 윤리경영사무국 설치

- 윤리경영 추진 최상위 기구로 CEO의 자문역할 및 윤리규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
-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사무국’을 설치하고, 윤리경영을 6가지로 범주화하여 각 영역별로 추진



《 윤리경영 실천 현황 》

가. 윤리경영 단계별 추진 경과



나. 주요 추진 실적

◎ 윤리경영의 적극적 실천의지 선언

- ‘윤리경영은 한진 문화의 최고 덕목이며, 초일류 물류기업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사항’이라는 CEO 선언을 통해 적극적 윤리경영 실천 의지 표명

◎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 윤리 프로그램 DB 운영

- 임직원 윤리실천 프로그램 구성 및 관련 자료를 DB화하고, 윤리 프로그램 홍보 및 실무와 관련된 Q&A 게시판 운영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관리 시스템을 2004년 5월부터 도입, 시행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 현업부서 업무 중 재무제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업무들에 대한 전사 및 부서단위별 관리절차를 수립,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 절차의 효율성과 외부공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사이버감사실 운영

- 내부직원, 협력업체, 고객들이 임직원의 불공정 행위나 비리사실을 제보하면 감사실에서 접수하여 확인, 조사하고 조치 결과를 제보자에게 안내

◎ 윤리경영 교육 및 공감대 형성

- 사내 각종 세미나나 임원, 팀장, 일반 구성원 등 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윤리경영 교육 실시하고, 명절에 CEO 명의로 전 구성원 및 Business Partner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동참을 요청하는 서신 발송

◎ 고객 권익보호와 서비스 증진을 위한 개선활동

- 고객 Needs와 불만에 대한 신속 처리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말씀’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사회공헌 활동 》

◎ 이윤의 일정 부분 사회환원 제도 운영

- 인터넷을 통해 예약 접수된 택배 매출의 1%를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가난한 마음의 집”에 기부

◎ 사회 소외계층 지원

- 장애인 재활을 위한 폐카트리지 무료 배송, 사랑의 분유 배달 무료 택배 지원,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운동 참여 등

◎ 기타 활동

- 우리어촌 살리기 100사 100촌 자매 결연 참여, 북한 청진시 고아원 지원물품 무상 운송, 중고 PC 개도국 무상 운송 지원, 전국 770여개 도서관지 초등학교 축구공 보내기 운동 참여 등

《 윤리경영 활동 결과 》

◎ 주요 대외 수상 경력

- 한국기업윤리학회 주관 ‘기업윤리대상’ 수상(‘06년 6월)
- 한국능률협회 선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육상운송 부문)’(‘06년 5월)
- 한국일보사 주최 Web Awards 고객서비스분야 최우수상 수상(6년 연속)
-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소비자 지킴이’ 선정(‘06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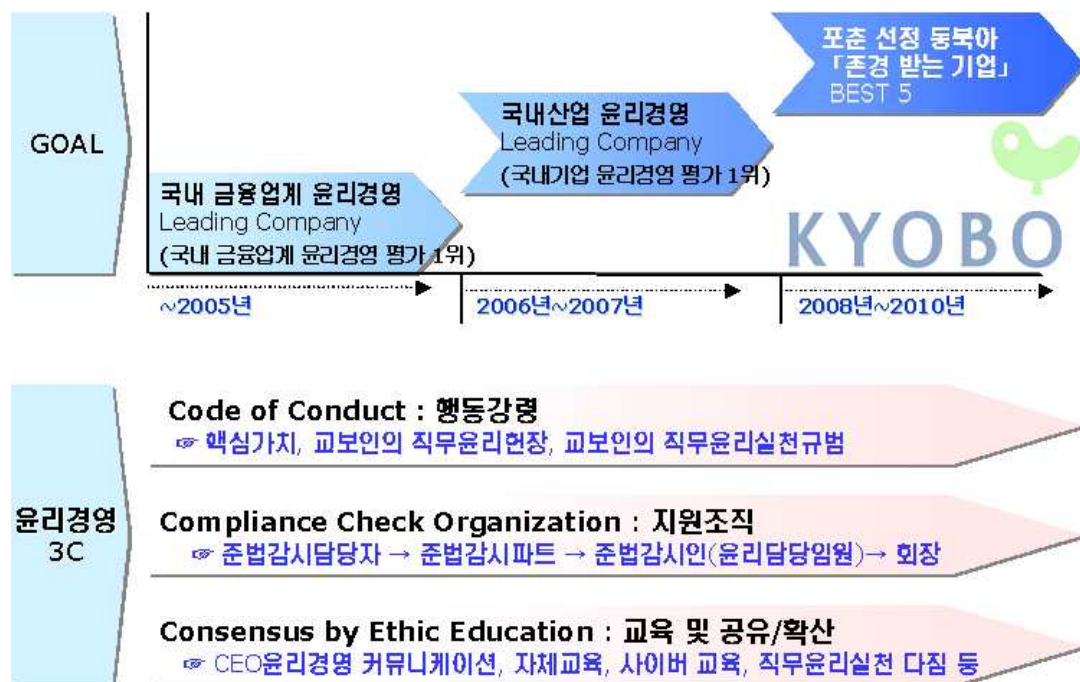
2. 교보생명의 윤리경영 사례*

* 2006. 8. 20일 교보생명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교보생명의 비전체계》



《윤리경영 추진 로드맵》



《윤리경영 실천 현황》

가. CEO의 윤리경영 실천 메시지

- ‘윤리경영은 고객기대 만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탁월한 이익을 창출해서 고객, 임직원, 투자자, 지역사회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상생 발전하는 것’

나. 윤리경영 제도 및 시스템

◎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제정

- 직무윤리헌장 및 직무윤리 실천규범을 제정하여 직무윤리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을 사전에 예방

◎ Clean 계약제 운영

- ‘사이버 구매 시스템’ 등을 통해 회사의 제반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 및 이행 과정에서 투명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간 상생협력을 도모함

◎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및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 다짐 (On-line) 실시

-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임원직무청렴서약’을 실시하고, 직무수행시 직무윤리헌장 및 직무윤리 실천규범을 적극 실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성과책임을 다하겠다는 ‘직무윤리실천 다짐’을 전 임직원이 매년 1월에 실시

다. 윤리교육 프로그램

◎ 교보 경영진 직무윤리실천 Workshop 및 전직원 사이버 교육 실시

- 핵심가치가 기업문화로 이어지기 위한 경영진 역할의 이해 및 실천력 제고를 위해 경영진 직무윤리실천 워크숍을 실시(반기 1회)
- 2002년 10월부터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Compliance Issue 및 직무윤리실천규범에 대해 사이버 교육을 실시

◎ 준법 윤리 자체교육 및 소집·순회 교육 실시

- 매월 셋째주 목요일을 준법 윤리 자체교육의 날로 지정·운영

- 조직장 및 준법감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직장의 직무윤리, 내부통제 역할 및 Compliance Issue 에 대해 교육 실시

◎ 「Yes!준법 ! OK!윤리」 만화

- 직무윤리실천규범 주요 내용 및 각종 Compliance Issue를 사례로 재구성하여 만화 제작 후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

라.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 내부신고 채널 운영

- 핵심가치 위반 신고 및 '준법 휘슬'
 - o 인터넷 홈페이지나 24시간 운영되는 준법·윤리 Hot Line을 통해 핵심가치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해결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함
 - o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준법감시인에 대한 건의, 회사 제도 중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해 건의하는 '준법휘슬'제도 운영

◎ 윤리경영 수준 진단

- 임직원에 의한 임직원 직무윤리실천 진단과 산업정책연구원의 진단을 통해 CEO, 근무환경 등 7개 부문에 대한 윤리경영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직무윤리 실천력을 제고

◎ 모니터링 & 피드백

- 각 조직단위별로 준법감시담당자를 두어 준법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원의 직무윤리 실천을 독려함
- 본사 전담조직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업무 현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토록 함

《사회공헌활동》

◎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운영

- 간병인 활동을 원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에게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간병인으로 양성한 후, 생활보호(의료보호)대상 환자 및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간병급여를 제공

◎ ‘교보다솜이 숲 해설 봉사단’(은퇴생활 지원프로그램)

-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숲 생태 해설에 대한 이론 및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청소년 대상 자연생태 안내를 통해 교육적인 봉사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해 일정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랑의 띠잇기’(소년소녀 가장 돕기 결연 프로그램)

- 사원들의 자발적 참여 아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는 결연 프로그램으로,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고, 회사에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사랑의 펀드를 조성한 후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프로그램

◎ 기타 활동

-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지원하고, 교보생명 교육문화 재단 등 다양한 공익재단 운영

《윤리경영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 윤리경영 성과

- 제1회 기업윤리 대상 (한국기업윤리학회 2003년)
- 2004년 한국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대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2004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올 스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2005년 존경받는 30대 기업 은상 (동아일보-한국 IBM BCS)

◎ 향후 추진과제

-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
- 직무윤리실천규범의 구체화 및 실천수준 진단 관련 지수 개발

III. 국내 윤리경영 동향

【 기업 관련 】

◎ 한국철도공사(수도권서부지사), 'KORAIL 사회봉사단' 발족(7.31)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KORAIL 사회봉사단'을 발족하고, 사랑의 성금(korail-lovefund) 구좌 확대 개설,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 및 무의탁 어른 돕기, 농촌 일손돕기, 환경봉사활동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칠 예정
- 또한 임직원 일동은 윤리경영실천 다짐대회를 갖고 '따뜻한 마음', '열린 사고', '열정적 행동'의 사원정신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고객의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할 것을 다짐

◎ 한국인터넷진흥원, 윤리경영 대상수상(7.31)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자체 윤리평가 실시, 윤리헌장 제정 및 반부패 윤리경영 교육 확대 등에 대한 노력을 인정 받아 '2006베스트코리아 어워즈'*에서 윤리경영 대상 수상

* 기업, 공공기관, 관공서, 협회 등을 대상으로 산업별, 부문별로 기업의 투명성, 사회공헌도, 경영혁신활동, 윤리경영 실천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상

◎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최초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 및 간부급 청렴도 자체평가 시행(8.1)

-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와 간부급 청렴도 자체평가를 8월부터 시행

*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과정을 외부 민간인이 관리·감독하는 제도

-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철도공사의 사업 발주부터 계약 체결, 계약 이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할 '옴부즈만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

- 간부급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성과 업무역량에 대한 자체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 잔존해 있는 비윤리적 요소들의 사전 차단은 물론 조직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

◎ 현대중공업그룹,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추구(8.9)

- 현대중공업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사이버 상담창구(<http://hipro.hhi.co.kr>)를 개설·운영하고, 협력회사가 휴면 특허기술 이전과 연구소 보유설비 및 기술인력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현금 결제 범위 확대,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개발 지원, 정보화 시스템 지원, 인재 공동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중

◎ 강원랜드, 윤리경영 강화 ‘클린카드제’ 도입(8.12)

- 강원랜드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클린카드(Clean Card)제’*를 도입, 시행

* 기업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룬싸롱,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에 대한 사용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부여, 사용제한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거절 메시지와 함께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 발간(8.13)

- 전경련은 윤리경영을 도입·추진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윤리경영 선도기업의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윤리경영 추진방법과 전략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동 책자를 발간
-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는 총괄편(제1권) 사례편(제2권, 제3권) 등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괄편에서는 모든 업종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경영 실천 전략을 도입, 제도화, 정착 및 체계화, 윤리적 명성 유지 등 4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의 추진 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 사례편에서는 업종별로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50개 주요 기업의 실천 프로그램을 담고 있음

◎ 신세계, ‘신세계 윤리경영 백서’ 발간(8.15)

- 신세계는 1999년 윤리경영이념을 채택한 후 사회공헌활동과 윤리경영 활동으로 얻은 실천 사례들을 정리하여 2년마다 ‘윤리경영 백서’를 발간하고 있음
- 이번 백서는 지난 2004년 6월 이후 신세계가 추진한 ‘신세계 페이 캠페인’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희망배달 캠페인’의 내용이 추가됨

◎ 대한상공회의소,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와 과제’ 설문조사 결과 발표(8.16)

-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의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와 과제’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
-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3.1%가 ‘기업의 사회공헌이 다소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도 33.9%로 나타나 전체의 87.0%가 사회공헌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적절한 사회공헌규모에 대해서는 ‘경상이익의 1%’라는 응답이 79.7%로 가장 많았고, 경상이익의 2%와 3%, 4%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각각 8.2%, 5.8%, 0.7%이었음
- 그러나 국내 대기업들이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사회공헌 규모는 경상이익의 2%(2005년 기준)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같은 수치는 미국(2004년 기준 1.3%)이나 일본(2003년 기준 1.5%) 등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상의는 밝혔음

- 또한 이번 조사에서 국내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이미지 향상’이나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는 도움이 되나 ‘매출’이나 ‘주가’ 등 재무적인 성과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81.4%)이 ‘별다른 영향이 없다(18.6%)’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매출액 증가’와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는 62.7%와 73.7%로 조사됨

◎ 한국수자원공사, 청림지킴이 60명 활동개시(8.21)

-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 사무소에서 선발한 과장급 60명의 ‘청림지킴이’들이 8.16~17일 첫 워크숍 개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 앞으로 청림지킴이들은 행동강령 준수 지도점검, 강령 위반자 조사, 클린신고 창구역할 및 상담·교육·부패예방을 위한 각종 보고활동을 하게 될 예정

◎ 중소기업 CEO, ‘한국경영인포럼’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총회 개최(8.23)

- 중소기업 CEO들은 ‘바른사회·바른기업을 만들어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바른 기업인이 되자’를 모토로 ‘한국경영인포럼’을 결성하고 창립 총회를 개최
- 동 포럼은 앞으로 회원을 늘려가면서 매월 1회 정기포럼과 외부강사 초청 워크숍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의식 확산에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

【 정부 관련 】

◎ 기획예산처, 87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경영혁신 컨설팅 실시(8.8)

-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단이 87개 산하기관의 경영혁신방안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표별 평가결과를 상세히 설명
- 87개 기관별로 평가단과 금번 평가결과, 혁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평가과정 개선방안 등도 공동 모색
- 이를 통해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일회성의 성과 점검이 아닌, 지속적 경영혁신을 위한 환류 시스템으로 정착할 것을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 온라인 커뮤니티(www.ftchelp.go.kr)' 구축(8.10)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소기업인들간의 사이버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 온라인 커뮤니티(www.ftchelp.go.kr)'를 구축, 운영
- 동 사이트는 또한 현재까지 별개의 홈페이지에서 운영되어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정책 및 법령소개, 부당한 단가인하 신고센터 등을 통합하여 “하도급관련 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커뮤니티를 대·중소기업간 거래상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과 방안모색을 위한 주요 정책채널로 활용할 예정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8.11)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소비자보호업무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금융회사에 인증을 부여하는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증' 제도를 2007년 2/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
- 동 제도는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들에게 소비자보호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도입·이행한 금융회사들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 동 지침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으로 제시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영진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철학 및 리더쉽
 - 소비자보호업무 담당 인적자원 및 조직 운영
 - 상품 및 마케팅 관련 소비자보호 체제
 - 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템
 -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교육시스템 등
- 동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이용자는 향상된 금융서비스를 받게 되어 민원이 감소하며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업무의 질적 제고를 통해 대고객 이미지가 개선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노동부, 재해율 낮은 건설업체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8.17)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대 건설업체중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매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 70개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

* 환산재해율 : 사망자 1인은 부상재해자의 10배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 0.57%('03년), 0.51%('04년), 0.40%('05년)

-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2006. 8월 ~ 2007. 7월) 신규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와 공사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게 됨

◎ 산업자원부,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개최(8.17)

-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정부의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
- 동 회의에서 산업자원부는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2006년 하반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보고함

-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상생협력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10개 분야에 4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힘
-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2005년부터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 상생협력정책들을 더욱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 아울러 상생협력의 확산을 위해서, 제도적 지원*과 하도급 공정거래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키로 함